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6876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687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228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현진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정호

변론종결 2022. 6. 17.

판결선고 2022. 7. 1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2283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378,153원 및 그 중 152,625,480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제5면 제7행의 “진기실사용자로서”를 “전기실사용자로서”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동의” 앞에 “묵시적으로”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웅기, 판사 양은상, 판사 김양훈